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-6호

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-1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남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3년 1월 18일

부산광역시 남구청장

1.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

가. 변경결정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1	21	10	국지도로	262	감만동 대3-10	감만동 3-183	일반도로	소1-23	부고제510호 (74.5.14.)	
변경	소로	1	21	10	국지도로	262	감만동 대3-10	감만동 3-183	일반도로	소1-23		경미한 변경
기정	소로	1	22	10	국지도로	948	감만동 73-6	감만동 24-128	일반도로	-	부고제510호 (74.5.14.)	
변경	소로	1	22	10	국지도로	948	감만동 73-6	감만동 34-143	일반도로	-		경미한 변경
기정	소로	1	23	10	국지도로	308	감만동 8	감만동 29-8	일반도로	소1-21	부고제510호 (74.5.14.)	
변경	소로	1	23	10	국지도로	308	감만동 8-20	감만동 29-132	일반도로	소1-21		경미한 변경

나.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1-21	소로1-21	· 도로 선형 변경	· 감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토지경계 확정에 따라 당초 결정 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저촉 토지 해소
소로1-22	소로1-22	· 도로 선형 변경 · 도로 종점 현행화	· 감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토지경계 확정에 따라 당초 결정 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저촉 토지 해소 ·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종점 현행화
소로1-23	소로1-23	· 도로 선형 변경 · 도로 기·종점 현행화	· 감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토지경계 확정에 따라 당초 결정 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저촉 토지 해소 ·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기·종점 현행화

2. 관계도면 : 게재 생략(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). 끝.